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65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25년 3월 31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4호)
- 나.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 (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다. 공공시설물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디자인 서울거리

-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 라.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 (안 제10조제1항제6호)
- 마.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안 제11조의2)
- 바.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안 제17조제2항2호)
- 사.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안 제17조제4항)
- 아. 그 밖의 인용조항 수정(안 제2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6호) 및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법」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 의견있음(미반영)

※ 의견내용 :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업용 미디어폴과 같은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높고 빛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됨(제10조1항2호 관련)

※ 미반영 사유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및 설치·디자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옥외광고물 등에 적용되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사항(붙임 1)은 ① 간판 색채를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현행 조례 제2조제3항4호), ②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며(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③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안 제10조제1항제2호), ④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한강 선착장을 추가하며(안 제10조제1항제6호), ⑤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을 삭제하고(현행 조례 제11조의2), ⑥ 창문 광고물 중 전광류 광고 제한을 삭제하며(현행 조례 제17조제2항2호), ⑦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조항을 신설(안 제17조제4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밖에 조문간 인용 조항 오류 정정, 표현 방식 통일,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상기 ①~⑦의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나. 검토 내용

(1) 간판 색채 제한 규정(현행 조례 제2조제3항4호) 삭제

- 현행 조례 제2조제3항제4호는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서 간판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상 사용을 2분의 1(5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도시경관의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디자인 서울’ 정책과 연계된 도시 경관관리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어왔음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 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3. (생략)</p> <p>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p> <p>③ -----.</p> <p>1-3. (생략)</p> <p><삭 제></p>

-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적색류’ 및 ‘흑색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색채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 차이에 따른 실무 혼선이 발생해 왔고, 자영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¹⁾하였고, 서울시(이하,

1)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제한 규제 완화’관련 검토의견 요청(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2237, 2023.9.20.)

‘시’)는 이를 수용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제3항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색채 사용 규제 완화로 인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간판 디자인 선택권이 확대되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특히, 주요 광역자치단체(부산·대전·울산·경남·제주)가 관련 규정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함
- 다만,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 간판을 비롯한 광고물등에 자극적인 색상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도시경관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주요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지에서는 시각적 피로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도시경관 훼손 및 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해 색채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옥외광고물 심의기준 구체화 등 후속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 현행 조례 제9조의2제1항제6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6의2호2)에 따라 입간판의 구조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 2020년에 신설한 것으로 입간판의 재료³⁾를 ‘비철금속’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5.(생략)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입간판의 재료를 ‘비철금속’으로 명시한 유일한 사례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④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 을 말한다.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④ ----- ----- ----- 1. ~ 5. (현행과 같음) 6. ----- 금속 등 -----

- 현재 대부분의 입간판이 철제 프레임 등 금속 재료로 제작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약 95퍼센트 이상의 입간판이 철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음. 현행 조례의 규정과 실제 현장 간의 괴리가 크고 조례 위반이 고착화되어 왔으며, 입간판 신고제도의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사항이 접수되었고⁴⁾ 시는 관련 부서 검토 및 ‘제7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2023.12.20.)’ 심의 결과에 따라 입간판 재료 기준을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입간판 재료 기준이 완화될 경우, 소상공인·영세업소가 일반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법무담당관-18389, 2024.11.27.)
 · 중구 : 서울특별시 입간판 재료 규제 완화 요청 건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 답변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도시경관담당관-14467.2024.12.11.)
 · 타시도 현황, 소상공인 영업 환경, 안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

용할 수 있게 되어 간판 제작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조례 위반 점검을 위한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임. 또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간판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동식 입간판은 무게, 고정방식, 소재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할 경우 지속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향후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시하거나 자치구별 점검·계도 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

(3)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에 대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음. 이는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강남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설치된 가로영상문화시설물(미디어폴)만 해당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로영상문화시설

〈 강남구 미디어폴 운영 현황(2025) 〉

설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항 2호 가로영상문화시설 규정 • 서울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2009년 최초설치)
설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시기(전면 리모델링) : 2022년 4월 • 설치구간 : 강남대로 강남역 ~ 신논현역 (760m) • 설치규모 : 미디어폴 18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폴 크기 : 가로 1.6m×세로 1.5m×높이 10.9m ※ 미디어폴 구성 : 대형 전광판 3면, 하단 소형 키오스크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법 : 민간운영사 위탁 (제한경쟁입찰 → CJ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 2022년 4월 ~ 2027년 4월(협약서상 5년 계약 후 5년 연장 가능) ↳ 민간운영사 리모델링 비용(66억/18기)-운영 비용 부담 등 누적이익금 중 일부 공공기여 사용(강남역 일대 시설정비사업 및 행사 등) • 운영사항 : 공익 콘텐츠 및 상업광고 송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출시간 : 매일 06시~24시 - 영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상업 광고 ┆ 20% 공익콘텐츠 (우리구.시청.경찰서 등 홍보영상, 미디어아트쇼)

- 가로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은 공공정보 제공, 문화콘텐츠 송출, 긴급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공공시설물로서, 강남구 외 다른 자치구에서도 문화관광 활성화 및 정보 전달 수단으로 설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초구는 현행 조례 제 10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으로 인해 강남구 외 지역에서는 상업광고가 가능한 가로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의견을 시에 제출⁵⁾한 바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각 자치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가로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도시 미관 개선, 스마트도시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유치를 통한 재원

5) 미디어폴 설치 관련 질의 회신 요청(서초구 도시계획과-2630,2024.02.23.)

- 같은 강남대로변 강남구와의 형평성 및 도시경관 부조화 해소,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디지털 광고물 설치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규제에서 산업진흥으로 패러다임 변화 및 시대상을 반영한 미디어폴 설치에 대한 긍정적 검토 및 규정 해석 요청

확보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모든 자치구에서 상업광고가 가능한 가로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 설치가 일률적으로 허용될 경우, 가로경관 훼손이나 시민 보행불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로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 및 보행로를 포함한 도로의 폭 등 보행 환경을 고려한 설치 기준과 해당 시설에 표출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조율한 후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2025.2.13.~3.5.) 동안 제출된 의견 중 “단서조항 삭제시 가로영상문화시설(미디어폴)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보행자 통행 방해, 도시경관 훼손, 빛공해 유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영세 광고업자와 시민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등 광고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

(4) 광고표시 가능 공공시설물에 한강 선착장 추가(안 제10조제1항제6호)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선착장’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함
- 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수상버스(이하,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리버버스 전용 선착장을 공공시설물로 지정하여 광고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⁶⁾하였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한강이용증진과 -458,2025.1.20.)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p> <p>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p>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8)에 따라 하천(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경관지구, 보호지구 등은 원칙적으로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에 해당되며, 선착장은 「하천법」 상 하천시설에 포함되어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제1호마목9)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 가-라. (생략)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

편익시설물'을 추가로 공공시설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10)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표시·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강 선착장을 공공시설물로 지정하여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로 규정된 육교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경우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고¹¹⁾,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이라도 공공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¹²⁾한 바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1¹³⁾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¹⁴⁾에 따라 한강 '리버버스 전용 선

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11) 법제처 유권해석(2009. 9. 4., 안건번호 09-0246) : 육교가 시행령상 광고물 표시 금지장소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 해석은 "대통령령에서 광고물 표시 금지를 정하면서 동시에 그 예외 허용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12) 법제처 유권해석(2008. 10. 15., 안건번호 08-0297) :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충족하면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으며, 조례로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13)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 요트마리나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1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2조(정의)
 - 1. "리버버스"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착장'에 한하여 광고물등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리버버스는 시의 공식 수상교통수단으로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한강 '리버버스 전용 선착장'을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리버버스 전용 선착장'을 공공시설물로 지정하여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상업광고 유치를 통한 수익 확대¹⁵⁾로 리버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자립적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한강 선착장은 대부분 공원 또는 수변 자연경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무분별한 상업광고로 인한 경관 훼손, 시민 불편, 빛공해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좋은빛위원회 등 심의를 통하여 설치 위치, 크기, 조명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성과 경관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 선착장 옥외광고 예상수입(미래한강본부 재무성분석자료)

(단위 : 백만원)

구분	유형	단가	구좌수	선착장	개월수	비율	연매출이익
선착장외부	디지털패널	5.5	15	5	12	65%	3,217

<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위치도 >



(5) 정당현수막 표시방법 조항(현행 조례 제11조의2) 삭제

- 현행 조례 제11조의2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정당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개수·표시방법·내용 등에 대해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자치구에서 정당현수막과 관련한 철거조치의 근거로 활용되어왔음

현행	개정안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p> <p>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p> <p>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p> <p>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p>	

- '24.1.12일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의 설치와 표시기준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일원화되었고, 정당현수막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일정 요건 하에 게시가 가능하며 그 요건은 모두 상위법령에 의해 정해지도록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1조의2는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일부 자치구(송파구·서대문구)에서 현행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을 철거한 데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4 구합273)에서도 해당 조항은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¹⁶⁾이 내려졌음
- 따라서, 현행 조례 제11조의2는 신설 당시에는 정책적·현실적 필요에 따른 규율로써 의미가 있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실상 법적 효력을

16) 판결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내용, 개수, 표시방법 등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 단위로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시 제한을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판단임. 특히 이는 헌법상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민감한 영역으로서 더욱 엄격한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됨

상실하게 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 처분의 위법성까지 인정된 상황이므로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행 조례 제11조의2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법적 분쟁의 예방, 정당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6) 창문 광고물 중 전광류 광고 제한(현행 조례 제17조제2항2호) 삭제

-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는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이 건축물의 창문 등을 통해 표시되는 경우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의 1층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p> <p>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p>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건물----- -----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 ----- -----.</p> <p><삭 제></p>

-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 사업(2020~2024)에서 주거지역 내 부동산 업소의 창문에 디지털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불법 종이광고물 대체, 매물 정보의 실시간 제공, 빗공해 수치 기준치 미달, 시민 민원 미발생 등 긍정적인 실증 결과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시에 관련제도의 준비를 요청¹⁷⁾함
-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이견과제 조정회의¹⁸⁾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¹⁹⁾에

17)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준비를 산업부 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가능하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정비요청서를 포함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규제샌드박스팀-31,2024.1.9.)’를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송부함

18)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이견과제 조정회의(2024.5.)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팀,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등 관계 부처가 참석

- 논의 내용

① ‘창문 이용 디지털광고물’ 규정(서울시 조례)의 상위법령 위임 일탈 여부 : (법제처, 행안부, 법학교수) 서울시 조례의 상위법령 위임 일탈 소지가 있어 개정 필요

② ‘디지털 사이니지’의 표시방식이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현행제도에서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나목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음. 실증 결과 디지털 사이니지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적용사례 등을 각 지자체에 안내 예정

1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등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등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로 표시 가능 구역을 상업지역 건물의 1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따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회의 결과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위임 근거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설(안 제17조제4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20)에서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전단, 현수막 등 주요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창문 이용 광고물’은 별도로 신고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²¹⁾에 따라 표시방법(위치, 재질, 면적 등)에 대해서만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u><신 설></u></p>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u>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u> <u>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u> <u>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u> <u>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u>
<p>④ (생략)</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창문 이용 광고물’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현행 조례 제17조의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²²⁾ 따라, 불법 광고물로 인지하더라도 철거·시정명령 등의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행정지도나 계도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광고물의 난립, 도시미관 훼손, 시민 안전 위협, 지속적인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
- 특히, 유리벽과 창문 간의 법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²³⁾이 크며 행정안전부·시·자치구 간 해석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단 광고물 난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은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해당 조항은 2025년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행 예정인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향후 민원

22)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6-0360, 2016.10.24.) : · 창문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만을 정할 수 있는 광고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행정처분은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음. 따라서 **창문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함**

23) 유리벽의 경우 벽면 이용 간판으로 규정하여 허가 및 위반시 행정조치 대상이나, 유리창문은 창문이용 광고물로 행정조치가 불가함. 유리소재로 마감된 건축물이 많아 ‘유리벽’과 ‘유리창문’의 구분이 필요하나 기관별 해석차이가 있음

○ 연달아 붙어있는 유리창에 대한 기관별 해석 사례

- ▶ (서울시) 개폐 기능이 없는 유리마감은 창문이 아닌 ‘유리벽’에 해당
- ▶ (자치구) 유리 주변에 콘크리트 마감이 있으므로 ‘창문’에 해당
- ▶ (행안부) 커튼월과 같이 유리가 떨어진 부분이 없이 연달아 붙어있는 일체화된 형태는 ‘유리벽’에 해당 / 커튼월 방식으로 벽면을 유리로 마감한 건물인 경우 창의 개폐 여부에 따라 개폐가 되지 않는 창문은 유리벽으로, 개폐가 가능한 부분은 창문으로 해석 가능

발생 여부, 광고 효과, 경관 조화 등의 실증 결과를 분석한 후 본 사업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조례로 규정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기준 비교 >

구분	현행 조례 기준 (제17조제1항, 제2항)	시범사업 기준(개정안) (제17조제5항 신설)	비교
적용 대상	모든 창문 이용 광고물	시범사업 신청 업소로 한정	시 전체 → 신청 대상 제한
유형 구분	① 유연성 원단 광고물 ② 입체형 구조물 광고물	① 유연성 원단 광고물 ② 입체형 구조물 광고물	구조는 동일하나 조건 완화됨
표시 위치	① 3층 이하 유리벽 안쪽 ② 2층 이하 건물 유리창 안쪽 * 전광류 경우 상업지역1층	표시 위치 무관하나 벽면 간판 없을 경우 천장 매달기/지주 부착 가능 창문에서 20cm 이상 이격 등 추가	층수 기준 삭제, 표시 방식 다양화
면적 기준	① 유연성 원단: 1폭 30cm 이하 ② 입체형: 유리면적 1/4 이내, 최대 1m ² 이하	전체면적기준 1/4 입체형 경우 최대 1m ² 유지	유연성 원단의 크기 제한 완화
표시 허용 조건	자사광고 또는 직접판매 상품 광고	심의 통과 후 광고 유형 제한 없음	용도 유연화 가능성 있음
심의 요건	없음 (표시기준만 있음)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사전 심의 요건 신설
행정 조치 가능성	행정조치 불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조건 부여 가능	관리 실효성 확보 가능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해석에 따라 조례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광고물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정합성과 행정의 현장 적용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간판 색채 제한 규정(현행 조례 제2조제3항4호) 삭제”는 현행 조례의 모호한 표현(‘적색류’ 및 ‘흑색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실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간판 디자인 선택권 확대되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자극적인 색채 과다 사용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심의기준 및 색채 가이드라인 등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안 제9조의2제1항제6호)”는 입간판의 재료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하여 실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입간판의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영세업소의 간판 제작 유연성을 확대하고 입간판 재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판단됨. 다만, 이동식 입간판의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향후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별 점검·제도체계 구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제2호)”는 기존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에만 광고물 등의 표시가

가능했던 제한을 해소하고 전 자치구에 상업광고가 가능한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스마트공공시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무분별한 가로영상문화시설 설치로 인한 가로 경관 훼손, 시민 보행 환경 악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설치 전에 충분한 검토·조율이 필요함

-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선착장’ 추가**(안 제10조제1항제6호)”는 시 미래한강본부의 한강 수상버스(리버버스) 운영 기반 확보 및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한강 ‘리버버스 전용 선착장’을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 있어 타당하며, 해당 선착장이 공공 교통 수단인 리버버스를 위한 편익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물 지정의 정당성도 인정됨. 다만, 한강 선착장은 대부분 공원 또는 수변 자연경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훼손, 시민 불편, 빛공해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좋은빛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통해 공공성과 경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관련 조항**(현행 조례 제11조의2) **삭제**”는 현행 조례 제11조의2는 신설 당시에는 정책적·현실적 필요에 따른 규율로써 의미가 있었으나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관련된 행정소송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법적 분쟁의 예방 등의 측면에서 삭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 “**창문 광고물 중 전광류 광고 제한**(현행 조례 제17조제2항2호) **삭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전광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4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 가능 구역을 상업지역 건물의 1층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창문 이용 광고물 시범사업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창문 이용 광고물’을 별도의 허가·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그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현행 조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p> <p>5. ~ 10. (생략)</p> <p>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생략)</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및 ----- ----- <u>시행령</u>----- ----- -----.</p> <p>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제12조제8항-----.</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7조-----</p> <p>5. ~ 10.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나.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p> <p>2. (생 략)</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p> <p>가. ~ 다. (생 략)</p> <p>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생 략)</p> <p>④·⑤ (생 략)</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7. 간판이「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p>	<p>나. ----- 제 17조-----</p> <p>2. (현행과 같음)</p> <p>3. -----</p> <p>-----</p> <p>----- 종료 시에 -----</p> <p>-----</p> <p>-----</p> <p>-----</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현행 5호와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p> <p>-----</p> <p>-----</p> <p>----- 디지털광고물 -----</p>

현 행	개 정 안
<p>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 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p> <p>8.·9.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 략)</p> <p>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 게시 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p> <p>②·③ (생 략)</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쉼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p> <p>3. ~ 5. (생 략)</p> <p><u><신 설></u></p>	<p>8.·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연립형간판 ----- ----- -----.</p> <p>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금속 등-----.</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가로영 상문화시설</p> <p>3. ~ 5. (현행과 같음)</p> <p>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p>

현행	개정안
<p>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p> <p>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p> <p>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p> <p>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p> <p>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p> <p>②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p> <p>제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1.·2. (생략)</p>	<p>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1조의2(집회현수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호 -----</p> <p>-----.</p> <p>1.·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구청장은 <u>제11조제1항제3호</u>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②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1. <u>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u></p> <p>2. <u>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신설></p>	<p>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제11조제1항제4호</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건물</u> ----- ----- <u>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u> ----- -----.</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p> <p>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p> <p>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p>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p> <p>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